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503 |
|----------|-----|

2025. 6. 11.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1.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7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4. 28.)

“ 심사보류 ”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중심의 통합적인 일자리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부서별 역할 정립 및 계획 수립 절차(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세부 실행계획과 정보통신망 구축(안 제8조부터 제9조)

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부터 제12조)

마. 민간 위탁 및 감독 체계 마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고용정책 기본법」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6) 「직업안정법」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고용정책심의회¹⁾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여성가족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됨.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현황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2022년 통계 기준 강남구가 사업체 수(약 10.7만 개)와 종사자 수(약 80.2만 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 지역 일자리 통합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를 비롯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5개의 조례가 이미 존재함. 구청장은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①일자리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85호] | |
|--|--|
| 제5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 |
|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
|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연번 | 조례 제명 | 소관부서 |
|----|-------------------------------|--------------|
| 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
|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 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
| 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
| 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나. 검토 내용

○ 용어 정의

- 안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열거한 사항들은 일부 어순을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행 기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과 그 내용이 동일하여 조례 상호 간 중복된다고 보임.
- 안 제2조제2호는 서비스 범위가 일자리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는 <자치법규 형식 결정 기준>에 따라 시행규칙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임.

< 정의 규정 비교 >

| 원 안 | 수 정 의 건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 <u>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p>가. ~ 자. (생략)</p> <p>2. “통합 지원”이란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일자리 매칭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p> <p>3. ~ 4. (생략)</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5조의 <u>일자리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모든 사업</u>을 말한다.</p> <p>가. ~ 자. <삭 제></p> <p>2. “일자리맞춤통합지원”이란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상담, 일자리 매칭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말한다.</p> <p>3. ~ 4. (생략)</p> |

○ 적용 범위

- 입법기준에는 동일 규범 내에서도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이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일자리사업이란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자리사업’ 이라고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 경우 어느 구문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일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85호] |
| (적용 범위 규정 없음) |

| 원 안 |
|--|
| <p>제2조(정의)</p> <p>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u>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을 말한다.</p> <p>가. ~ 자. (생략)</p> |
| <p>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u>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자리사업</u>에 적용하며,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운영 및 관련 협력체계에 적용된다.</p> |

○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기능, 사무의 위탁**

-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근거이면서, 설치 목적이 통합지원계획의 수행에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임.
- 안 제11조에서 설명하는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는 안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 안 제13조는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 **시행규칙**

- 안 제14조의 내용은 실제적 측면에서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규정하는 내용을 구청장이 상세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임.
-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법제처 2011. 5. 20. 의견제시 11-0022)이 입안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이 입안기준은 형식적 측면에서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당연한 사실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일 뿐이므로 이 조문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시행규칙 규정 비교 >

| 원 안 | 수 정 의 견 |
|---|---|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p align="center"><삭 제></p> <p align="center">※ 시행규칙 제정 필요성은 이 조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음.</p> |

○ 부칙

- 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주요 업무계획이 수립된 시점에 여러 부서 관련 사무를 공포일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부 칙 >

| 원 안 | 수 정 의 견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p align="center">부 칙 (예시) ※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

○ 사전 확인 사항

< 자치입법권 법적 근거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헌법 제117조제1항) • 조례(지방자치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개정 절차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규칙(지방자치법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³⁾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

2)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지방자치법」 제114조),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도에서는 국가행정조직 또는 위임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다. 종합 의견

○ 일자리사업 수요자 중심의 사업체계 개편

-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입법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바탕으로 일자리정책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의의가 있음.
-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일자리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및 사업 재설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 통폐합, △사업을 신설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일자리사업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및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이 이행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구청장에게 사업 현황 통보, 개선 결과 보고, 중복참여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자리사업계획 사전제출 및 예산한정 근거 마련

- 조례 간의 체계, 조례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 이용편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조례안에는 일자리사업계획 사전제출 및 예산한정 근거와 관련하여 집행부 부서 간 사무분장,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만한 이행과 효율적인 달성이 기대됨.

※ 관계 법령

행정기본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824호]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4호]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605호]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4. 28.)

- 질의과정 중,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됨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질 의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인가
- 답 변 : 우선은 직영으로 시작할 예정이나, 민간기업과 협약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임. 송파구에서 인쿠르트와 협약을 맺어 일부 위탁으로 센터를 운영 중이며, 우리 구도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위탁 또는 전부 위탁을 검토할 예정
- 질 의 : 금번 조례 제정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 답 변 :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조례 제정의 최고 주안점이며, 구청에서 추진 중인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통합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조례 개정과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7. 토론 요지

- 입법 취지와 체계에 적합하며 조문이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규정하도록, 조문을 수정·신설·삭제하고 조문의 순서와 위치를 조정하고, 조 제목과 용어 등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503호

발의일자 : 2025. 6. 11.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의 규정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이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상호 간 중복이 발생하고 규정이 간결하지 못하므로,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효율·체계적인 규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근거 조를 명시하도록 수정함
- 입법 취지 및 체계 상 불필한 조문을 삭제하고, 논리적인 조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의 순서 및 위치를 조정함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를 신설하고 조 제목의 용어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정의의 열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 근거 조를 명시하도록 조문을 수정함
(안 제2조제1호)
- 조례 집행 상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당초 원안 제2조제1호가~자목,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제5항, 제8조, 제9조, 제14조)
- 전체적인 입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규정의 순서 및 위치를 조정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를 신설함(안 제4조)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 제목이나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함(안 제3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제3항, 제8조 제목, 제9조 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6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업무 체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 중 “구 및”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으로, “모든 일자리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관부서별 일자리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통

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를 제9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10조) 중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1조)제2호 중 “대한 통합”을 “대한”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주관부서의 협조)”를 “(부서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관부서”를 “구의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로,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u></p> <p>나. <u>고용촉진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 등 공공일자리사업</u></p> <p>다. <u>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u></p> <p>라. <u>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구인·구직 컨설팅 등 취업지원 사업</u></p> <p>마. <u>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u></p> <p>바. <u>예비창업자, 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u></p> <p>사. <u>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u></p> | <p>제2조(정의) ----- -----.</p> <p>1. ----- ----- ----- <u>제6조</u> <u>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u> ----- -----.</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

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
자리사업

자.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2. (생략)

3. “총괄부서”란 「기본 조례」에 따
라 일자리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
수립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의 실·과·담당
관 및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일
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
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일자
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효율적
인 시책 및 업무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계획 수립) ① 총괄부
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 받은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매
년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관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2. (원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통합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
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체계를 실효
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통
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략)
- 2. 주관부서별 일자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방안
- 3. 4. (생략)

③ 총괄부서의 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계획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통합지원계획 수립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② -----
-----.

- 1. (원안과 같음)
- 2. 일자리사업-----

- 3. 4. (원안과 같음)

③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삭제>

제4조(업무 체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자리사업에 적용하며,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운영 및 관련 협력체계에 적용된다.

제5조(일자리사업계획서의 사전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2.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
----- 일자리사업--

<삭 제>

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사업의 예산확보) ① 주
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
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제출된 일자리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실행계획 제출) ① 주관부
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일
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
시행일 또는 사업공고일 20일 전까
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실행계획을 제7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의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구청장은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통해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
스 포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
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5조-----

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구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 및 서비스 제공
3. ~ 8. (생략)

제12조(주관부서의 협조) 주관부서의 장은 통합지원센터가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 ④ (생략)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

--.

1. (원안과 같음)
2. ----- 대한 -----

3. ~ 8. (원안과 같음)

제8조(부서의 협조) 구의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
----- 제7조-----
-----.

제9조(사무의 위탁) ① ~ ④ (원안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통합 지원”이란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일자리 매칭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적용하며,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운영 및 관련 협력체계에 적용된다.

제4조(업무 체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통합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 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방안
3. 분야별 통합 지원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자, 창업자 등 통합지원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필요 및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구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3.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취업정보 제공
4. 구의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5. 일자리사업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이용자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
7. 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창업공간 조성 등 일자리사업 기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부서의 협조) 구의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통

합지원센터가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03 |
|----------|-----|

발의연월일: 2025 .04 .11.

발 의 자: 복진경·이동호·이호귀·
박다미·김진경·이향숙·
이성수 의원(이상 7인)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중심의 통합적인 일자리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부터 제4조)
- 나. 부서별 역할 정립 및 계획 수립 절차(안 제5조부터 제7조)
- 다. 세부 실행계획과 정보통신망 구축(안 제8조부터 제9조)
- 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부터 제12조)
- 마. 민간 위탁 및 감독 체계 마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 나. 고용촉진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 등 공공일자리사업
- 다.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
- 라.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구인·구직 컨설팅 등 취업지원 사업
- 마.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바. 예비창업자, 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사.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 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 자.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통합 지원”이란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일자리 매칭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기본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수립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과·담당관 및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업무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자리사업에 적용하며,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운영 및 관련 협력체계에 적용된다.

제5조(일자리사업계획서의 사전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2.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사업의 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제출된 일자리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 받은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 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주관부서별 일자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방안
3. 분야별 통합 지원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계획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통합지원계획 수립 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세부실행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일 또는 사업공고일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실행계획을 제7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의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구청장은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통해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자, 창업자 등 통합지원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필요 및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구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 및 서비스 제공
3.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취업정보 제공
4. 구의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5. 일자리사업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이용자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
7. 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창업공간 조성 등 일자리사업 기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관부서의 협조) 주관부서의 장은 통합지원센터가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 |
|------------------------|--|
| 사업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접일자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지원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신규/계속) |
| 기관(부서)명 | |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 추진현황 및 실적 | (계속사업인 경우 작성) |
| 추진계획 | ○ (자격조건, 모집인원, 선발절차 등 추진계획 상세히 기술) ○ ○ - - ○ 추진일정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0000.0월] --> B[0000.0월] B --> C[0000.0월] C --> D[0000.0월] </pre> </div> ○ 기대효과 |
| 첨부자료 |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추진보고서(계속사업인 경우만 제출) |

[별지 제3호서식]

| 일자리사업 세부실행계획서(제8조제1항 관련) | |
|--------------------------|--|
| 사업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접일자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지원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신규/계속) |
| 기관(부서)명 | |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 사업세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모집)기간: ○ 모집인원: ○ 신청방법: ○ 자격조건: ○ 신청배제대상: ○ 우대조건: ○ 선발절차: ○ 임금 및 근로조건, 지원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을 상세히 작성 |
| 문의처 | 기관(부서)명(전화번호) |
| 첨부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방침)서 ○ 공고문 ○ 기타 사업 홍보자료 |